

현안분석 2015-12

숙박 분야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연구

강 문 수

현안분석 2015-12

숙박 분야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연구

강 문 수

숙박 분야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연구

Study on legislation for Sharing Economy in
the Accommodation Industry Fields

연구자 : 강문수(연구위원)
Kang, Mun soo

2015. 10. 31.

요 약 문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계인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가운데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 공유경제와 관련, 우리사회에서 논의의 중심에 서있는 대상은 빈방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용자 사이를 매개하는 소위 ‘통신민박소개업’에 대한 논의
- 이와 같은 형태의 업종에 대한 현행 우리나라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즉 유사한 업종형태로 정당한 절차 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 문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개인의 방을 빌려주고 과금 하는 형태로 유희자원 활용을 과세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의 모호 등, 업 관련 숙박시설 제공자, 이용자 및 매개업자 간 다양한 문제 발생
- 이하에서는 통신민박소개업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법제적 개선에 관한 입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여 본래 의미의 공유경제 개념에 보다 부합하고 관계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제고함에 목적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 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
- 주요연구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적 논의와 그 출현 배경을 개관하여 현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공유경제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분야에 있어 공유경제 활용현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
- 제4장에서는 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제시

III. 연구의 주요내용

- 공유경제 개관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의미와 발생배경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유형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 숙박분야 공유경제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관광 숙박업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 법제개선방향
 -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IV.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공유경제 개념의 직접적 적용형태로서의 관광 숙박서비스 업종으로서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제시, 향후 관련 입법화 전개 및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주제어 : 공유경제, 관광진흥법, 관광산업,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While people in the world are undergoing an ordeal owing to the global recession, ‘Sharing Economy’, which refers to peer-to-peer-based sharing of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rather than owning them, is emerging as new paradigm of the global economy system.
- In conjunction with Sharing Economy, the topic for discussion in global society is so-called ‘E-Brokerage Service of Private Accommodation Business’ that is to mediate between those who want to rent vacancy rooms and lodgers.
- An adequate legislative provision on the type of business such as E-Brokerage Service of Private Accommodation Business in Korea is not been prepared; therefore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are occurring.
- The problems occurring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Regulative issues on people who interlope home-stay business for foreign tourists, Whether to tax or not on dealing between the individuals without registering corporation, and Vague

criteria for applicability to whether to consider the action utilizing unused facilities, which lends a private room and then charges for the rent, as an object of taxation or not.

-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propose legislative policy alternatives on the legal improvements and the problems arising by managing E-Brokerage Service of Private Accommodation Business', thereby contributing to more accord with the original meaning of Sharing Economy and to enhance the practical public rights and interests.

II. 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

- To meet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report implemented various methods such as ① researching and studying legislation and literature ② comparing South Korea's law with other countries law in similar areas ③ studying legislation and policies ④ holding experts' conference.
- Especially, this report tried to reinforce policy utilization for study's results by holding experts' conference and seeking advice on the related topic in order to get the objectivity and expertise of study.
- In chapter 2, this report will take a general view of conceptual discourses on Sharing Economy and appearance background of it, and will search the economy effect of application of Sharing Economy.

- In chapter 3, the current use state of Sharing Economy in the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industry will be introduced and the underlying issues posed by utilizing Sharing Economy in the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industry will be reviewed.

- In chapter 4. after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under current Tourism Promotion Act, this study will propose a legislative policy proposition for betterment of urban private accommodation business for foreign tourists.

III. Main Contents

- Overview of Sharing Economy.
 - Concept and occurrence background of Sharing Economy.
 - Types of Sharing Economy.
 -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Sharing Economy.

- Current status and underlying problems of Sharing Economy in accommodations business.

-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Sharing Economy in accommodations business.

- Improvement direction of Legislation on Sharing Economy.
- Current condition and underlying problems of laws related to urban private accommodation for foreign tourists under Tourism Promotion Act.
- Legislative policy proposal for consolidation of legislation.

IV. Expected Results

- This study proposes legislative policy propose for the improvements of underlying problems on urban private accommodation for foreign tourists as sightseeing accommodations business which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is directly applied to, henceforth, will be possibly made good use of basic standards for legislation of Sharing Economy related law and research.

➤ **Key words** : Sharing Economy, Tourism Promotion Act, Tourism Industry, Tourist accommodaion business, Urban tourist private accommodaion busines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제 2 장 공유경제 개관	17
제 1 절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과 발생배경	17
1. 공유경제의 개념	17
2. 공유경제의 발생배경	20
제 2 절 공유경제 핵심요인과 운영시스템과 핵심요인	23
1. 공유경제 핵심요인	23
2. 공유경제 운영시스템 및 거래 방식	23
제 3 절 공유경제의 효과	26
제 4 절 우리나라에서의 공유경제	27
제 3 장 숙박분야 공유경제 현황	31
제 1 절 공간의 공유	31
제 2 절 에어비앤비 현황	31
제 3 절 문제점	34

1. 국 외	34
2. 국 내	37
제 4 장 외국인관광 숙박업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41
제 1 절 법제개선방향	41
제 2 절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법제현황과 문제점	43
1. 현행 법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 체계	43
2. 행정제재에 대한 입법 불비	54
제 3 절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55
1.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한 법령상 구분체계 재구성	56
2. 대학 인근 하숙 및 원룸 영업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58
3. 공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61
참 고 문 헌	6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을 기점으로 한 세계적 경제공황은 소위 ‘공유경제’의 발현과 함께 경제 시스템은 물론 각 개인의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바 있다. 이는 곧 공유경제의 성격과, 그 가운데 특히 급속히 발달·진보되고 있는 ICT기술에 근거한, 경제생활 전반에 걸친 생산-분배-소비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공유경제는 기존의 상업적 경제와는 다른, 즉 소비자 만족을 위한 적정규모의 거래시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상호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여분의 자산이 있어야 하며, 소중한 자원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익명의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평판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진다.¹⁾

본 연구는 이러한 공유경제의 발현 양태 가운데 공간의 공유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공간의 공유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빈방, 주차장 등 공간적 여유를 대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가운데 세계적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Airbnb’를 주요 사례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간 공유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여분으로서의 빈방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공급자), 이를 기존 숙박업소의 이용에 비하여 비용적으로나 또는 여행지의 사회 환경적 특성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자(이용자)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을 중개하여 주는 플랫폼을 구성·운영하는 자(중개업자) 들 상호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

1) 김승길, IT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공유경제(Sharing Economy)’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울산발전연구원, 2015., 42면.

제점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고 특히 현 우리사회에서 관광숙박업과 관련하여 가장 논의의 중점에 서있는 이와 같은 공유경제 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업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신민박소개업’이라 설정하고자 하며, 이하에서는 이를 사용한다)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수의 관련 규정에서 주로 권고적 규정으로 설정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언급하여 보았다.

이를 통하여 통신민박소개업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법제적 개선에 관한 입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본래 의미의 공유경제 개념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숙박업종의 양태와 법제도적 구성 체계를 구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의미와 발생배경과 아울러 경제적 발현 유형에 관한 개관을 통하여 연구의 근거 구성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근거 제3장에서는 현행 통신민박소개업의 대표적 형태로서 우리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에어비앤비’업체의 경우를 조사-분석함은 물론, 이러한 유형의 공유경제 발현형태로 인한 제반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외국인 관광 숙박업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향후 법제적 개선에 관한 입법 정책적 제언의 도출을 목적으로 동법 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용상 나타나는 법-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정비방안과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관련 법률정비에 대한 내용을 논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에 있어 관련 문헌의 조사-검토 등 문헌조사방법과 현 숙박분야 공유경제 구현 관련 제반적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 실무적 관점 하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입법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면접조사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의 연구수행절차를 활성화하여 연구 성과물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공유경제 개관

제 1 절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과 발생배경

1.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共有)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하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 되고 있다.²⁾ 이는 하나를 나눠가지는 분배와는 달리 하나를 통째로 돌려쓰거나 똑같은 형태로 복제하여 소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³⁾ 또한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 1항).⁴⁾ 이러한 사전적·규범적 의미에서의 공유 개념에 대한 경제적 시스템과의 결합을 공유경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가 야기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치유책으로, 자원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상생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⁵⁾ 이는 2008년 하버드대 로런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로, 한번 생산된 제

2)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9C%A0>, 2015년 8월 3일, 최종 접속 확인.; 아울러 동 출처에서는 공유의 법률적 개념을,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의 소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9C%A0_\(%EB%B2%95%EB%A5%A0\)](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9C%A0_(%EB%B2%95%EB%A5%A0))).

3) 고윤승,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6호, 2014. 12., 79면.- 아울러 저자는 같은 글, 같은 면에서, “공유경제에서의 공유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소유권개념과는 달리 공유재로서 타인과 공동의 경험을 공유할 권리” 라고 하여 공유경제에서의 공유개념을 설정하고자 하고 있다.

4) 광노완,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3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8., 147면.

5) 주광진, 도시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공유플랫폼 사례, 국토, 국토연구원 2015.3., 84면.

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의 경제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된다고 한다.⁶⁾ 또한 그 기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태리를 중심으로 기독교 기반 공동체 경제의 포콜라레 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⁷⁾ 이와 같은 과거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차이점을 도시화 하여 본다면 아래와 같다.

【공유경제와 전통경제(상업경제)의 비교⁸⁾】

구 분		상업경제	공유경제
비즈니스유형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공급자)-개인(소비자)	P2P(Peer to Peer), 개인(공급자)-개인(소비자)
공급자 유형		전통적인 해당 분야 전문(중개), 기업(택시, 호텔 등)	정보통신(ICT)기반 스타트업 기업, 마이크로 기업가,(Micro Entrepreneur)
중개자	소속	(주로) 공급자 회사 (공급자=중개자)	(주로) 공유경제 전문 플랫폼 기업 (공급자는 중개자 아님)
	재화의 연결	오프라인(직접/전화)혹은 인터넷(앱 혹은 웹) 등	인터넷(앱 혹은 웹) 등 중심
	신규기업 진입장벽	높음	낮음

6) 김점산·지우석·강상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미래와 성공조건,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2014.2., 1면.

7) 김형균, 부상하는 공유경제, 시정소프트 활용방안, BDI 정책포커스(198), 부산발전연구원, 2013.4., 2면.: 포콜라레 운동에 관하여 상세히는, 고윤승,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6호, 2014. 12., 82면.

8) 송순영, 공유경제 서비스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8, 한국소비자원 2015., 34면.

제 1 절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개념과 발생배경

구 분	상업경제	공유경제
핵심가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	저렴한 가격, 가치있는 사용자 경험
신뢰확보수단	평판 및 과거의 거래 경험	인터넷 기반 직간접 평가
(서비스) 활용단계	(공유경제 기업에 비해) 복잡	(상업경제 기업에 비해) 단순
기본철학	소유	공유
	자원고갈	자원절약
	이윤창출	가치창출
	경쟁	신뢰
	과잉소비	협력적 소비 ⁹⁾

위 표를 통한 중심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소유 중심 경제는 대량 생산된 재화를 각자가 소유하여 사용하고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두는 반면에 공유시장경제는 소량 생산된 재화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며 공유하는 협업과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고, 재화를 소유하는데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데 가치를 두는 경제 개념이라고¹⁰⁾ 할 수 있을 것이다.

9) 김형균·오재환,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의 공유경제 적용방안,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2013., 34면.-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는 레이철 보츠먼(R. Botsman)이 전통적인 과소비 구조의 ‘미(me)’ 제네레이션에서 ‘위(we)’ 제네레이션으로의 큰 변화를 설명하는 가운데 상징적으로 들고 있는 새로운 소비양식의 하나다. 그녀는 이 현상을 ‘개인의 욕구와 공동체 및 지구의 필요가 균형을 맞춰가는 새롭고 유망한 경제 및 사회메커니즘’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중략) 소셜네트워크워크로 결집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염려를 더는 외면할 수 없고, 비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 집중 방식의 통제를 받는 구식의 소비지상주의에서, ‘공유하고 모이고 협력하는 협력적 소비 방식으로 이동’ 하고 있다고 본다.”

10) 황기연·전효정, 교통부문에서 공유경제의 실험 - 카셰어링을 중심으로-, 교통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교통연구원, 2014.3., 37면.

이러한 공유경제는 소위 공유플랫폼을 수단으로 한다. 공유플랫폼은 시간, 공간, 재능, 물건, 정보, 지식 등 잉여자원을 나누고 매개함으로써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¹¹⁾

주요 외국의 경우 이러한 공유경제를 적용한 공유플랫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주요 공유경제 플랫폼 현황¹²⁾】

서비스 예	미국 업체	유럽 업체
카셰어링	Zipcar, GoGet, WhizzCar	BMW DriveNow(독일), 폭스바겐 Quicar(독일)
숙박공유	AirBnB	Wimdu (독일)
장난감 공유	Babyplays	Dimdom(프랑스), Speelotheken(네덜란드)
교과서 공유	Chegg	-
의류 공유	Thredup, DressVault	Swapinthecity(독일)
예술품 공유	Atiscle	-
공간 공유	Gloo, Restolib	Sharedspace(독일)
유희물품 공유	Snlpgoods, Rentalic	Obi(독일)

2. 공유경제의 발생배경

공유경제의 발생배경에 관한 평가와 논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된 바 있으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도출하고 있는 사항은,

-
- 11) 주광진, 도시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공유플랫폼 사례, 국토, 국토연구원 2015.3., 84면.
 - 12) 김기연·김홍규, 협력적 소비,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에 관한 소비자 선호 유형 연구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주관성 연구 (통권 제27호),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3. 12., 27면.

- “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유·소비 관습 변화 : 경쟁적 소유와 과소비보다는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적정하게 소비하는 습관이 확산,
 ② 전 세계 휴대폰 사용인구 60억 명, IT기술의 급격한 발전 : 기존 대여산업에 소셜네트워크가 결합해 새로운 창조산업 형태로 진화
 ③ 생산체제보다는 소비욕구에 민감한 기업·비즈니스 환경 변화 : 무한정한 생산 확대보다는 협력적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 차원의 대응
 ④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소비문화 확산 : 디지털 커뮤니티를 통한 소규모 교환·거래·대여·지식 나눔 등의 공유형 소비가 확산”¹³⁾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유경제 발현에 있어, 핵심은 소유(ownership)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utility)하게 하느냐에서 답을 찾는 것으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 현명한 소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⁴⁾ 이 가운데 특히 공유경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 주요한 내용은 IT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영향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IT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영향은 공유경제의 선도 주체로서의 소위 ‘마이크로 스타트업(micro startup, 소자본 창업회사)’¹⁵⁾의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

13) 김형균, 부상하는 공유경제, 시정소프트 활용방안, BDI 정책포커스(198), 부산발전연구원, 2013.4.,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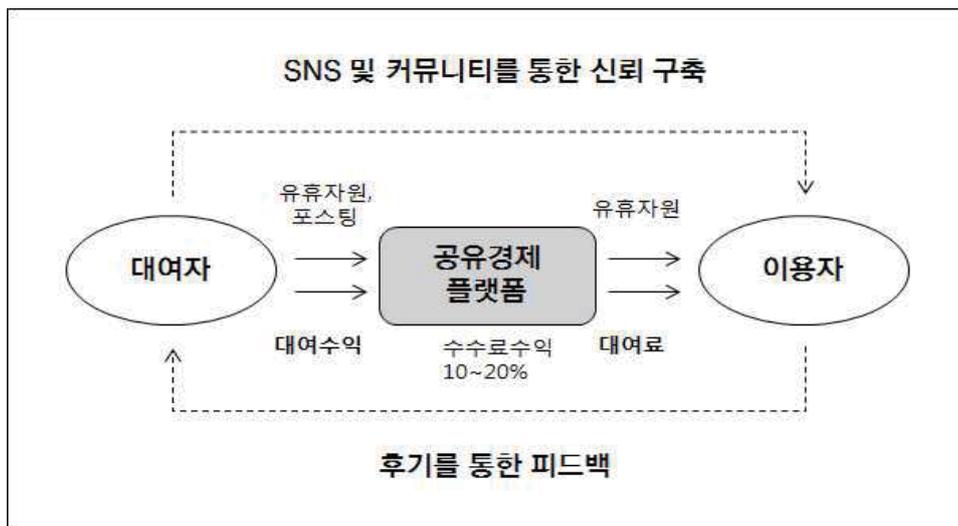
14)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유경제시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 정책연구 2013., 1면.

15) 김형균·오재환,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의 공유경제 적용방안,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2013., 43면. - 또한 저자는 같은 글 43면 ~ 44면에 걸쳐 마이크로 스타트업의 창업 용이성에 대하여, “---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1만 달러 미만의 돈, 즉 천만 원 남짓의 자본금으로 창업하는 것을 마이크로 스타트업으로 분류한다. 뚜렷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글앱스,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공유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인다. 제조업도 가능하다. 3D프린터로 쉽게 물건을 제조해내거나 테크숍과 같은 공구공유센터에서 자신의 제품을 직접 제작한다.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로 심시일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값싼 인프라, 쉬

였다. 소셜(Social), 위치기반(LBS:Location based service), 모바일 및 네트워크 기술 등과의 융합화는 정보공유나 프로슈머 소비자 시장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소셜네트워크가 효율적·효과적으로 네트워크의 확장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¹⁶⁾ 현재 세계 탑 30 스타트업 기업의 74%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와 평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54%는 페이스북과 연계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이러한 공유경제의 성격에 따라 경제(비즈니스 모델)모델로서 아래와 같은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이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¹⁸⁾】



원 자금조달, 공동 제도 열풍 덕에 누구나 창업자가 될 수 있는 ‘창업 르네상스’시대가 열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16) 고운승,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6호, 2014. 12., 82면.
- 17) 김형균·오재환,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의 공유경제 적용방안,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2013., 41면.
- 18) 김점산·지우석·강상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미래와 성공조건,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2014.2., 1면.

제 2 절 공유경제 핵심요인과 운영시스템과 핵심요인

1. 공유경제 핵심요인

공유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요인으로서, 물건과 서비스의 충분한 규모 확보에 해당하는 적정규모, 여분의 공간, 지식 등 여분의 자산으로서의 공유자산, 공공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 신뢰라 할 것이다.¹⁹⁾

2. 공유경제 운영시스템 및 거래 방식

공유경제의 운영시스템은, 제품서비스 시스템은 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sell)하는 것 보다 제공(offer)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²⁰⁾ 재분배 시장이란 사용되었거나 또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제품은 그들이 필요치 않은 곳으로부터 필요한 곳으로 물품을 재배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²¹⁾ 협력적 생활방식의 공유는 개인 간 대여(Zopa 그리고 Lending Club같은 플랫폼)와 급속히 성장하는 개인 간(peer-to-peer) 여행 같은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덕분에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글로벌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²²⁾ 현상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즉 관심사가 비슷한 사

19) 김형균, 부상하는 공유경제, 시정소프트 활용방안, BDI 정책포커스(198), 부산발전연구원, 2013.4.,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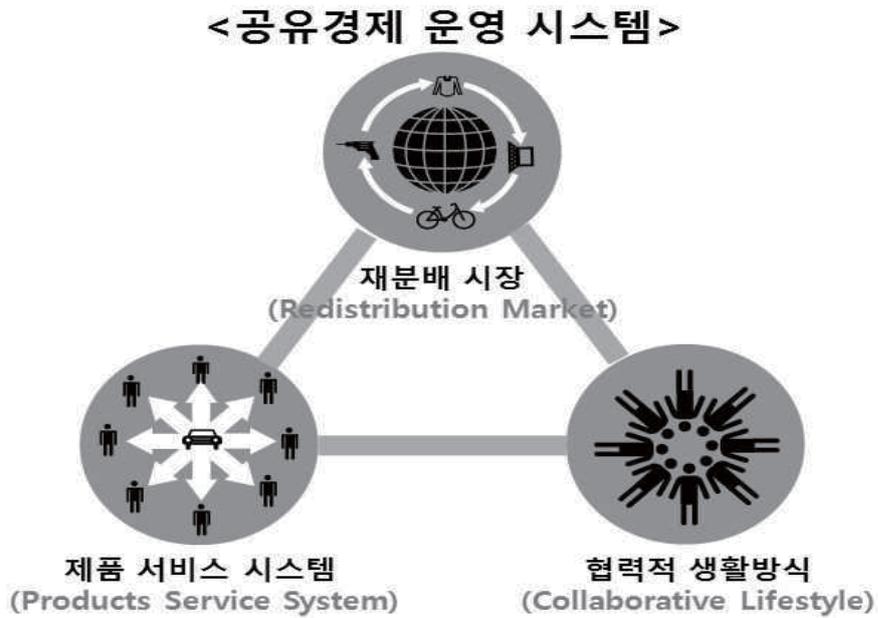
20) 고운승,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6호, 2014. 12., 86면.

21) 고운승,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6호, 2014. 12., 86면.

22) 고운승,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6호, 2014. 12., 86~87면.

람들끼리 시간과 공간, 기술, 돈 같은 무형자산을 공유하기 위해 모임을 하게 되며 주로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²³⁾

【공유경제 운영 시스템²⁴⁾】



아울러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거래방식은 아래와 같다.

23) 김형균·오재환,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전략으로서의 공유경제 적용방안,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2013., 02면.

24) 김형균, 부상하는 공유경제, 시정소프트 활용방안, BDI 정책포커스(198), 부산발전연구원, 2013.4., 3면.

【공유경제 거래방식25)】

유 형		설 명	예 시
개인 대 개인 거래형	공급자 → 플랫폼 → 사용자	유희물건에 대한 P2P 중개 플랫폼	판매, 중고물품 재판매, 유료회원가입, 투자 및 대출, 물물교환, 무료대여, 기부 등
쌍방간 사용권 교환형	공급자(사용자) ↔ 플랫폼 ↔ 사용자(공급자)	유희 물품 및 중고 물품, 재능 및 서비스를 커뮤니티 안에서 교환	유료대여, 유료회원가입, 공동소유 또는 공동운영, 투자 및 대출, 물물교환, 무료대여 등
소유권 교환형	공급자 ⇒ 플랫폼 ⇒ 사용자	중고물품 거래장터 플랫폼	판매, 중고물품 재판매, 공동소유 EH는 공동운영, 기부 등
사용권 제공형	공급자 → 사용자	렌터카 사업자와 유사	유료회원 가입 등

* → ⇒: 사용권, 소유권

* 공급자 : 자산이나 재능을 임대하거나 판매,
사용자 : 이용가능 한 제품과 서비스 소비

25) 김형균 · 오재환,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의 공유경제 적용방안,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2013., 42면.

제 3 절 공유경제의 효과

2011년 타임지(TIME)는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아이디어’로 선정한 바 있다.²⁶⁾ 또한 이코노미스트지(Economist)는 2013년 3월 공유경제를 커버스토리로 싣고 공유경제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 바 있으며, 이처럼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시장규모는 잠재적으로 120조원(1,110억 달러)을 넘는다.²⁷⁾

매스솔루션(www.massolution.com)에 따르면 2008년 8억 5천만 달러 수준이던 세계 공유경제 규모가 2011년 14억 7천만 달러, 2012년 27억 달러, 2013년 51억 달러까지 급팽창하였다. 이는 연평균 80%가 넘는 성장속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4년도 예상 규모는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²⁸⁾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경제의 다양한 자원(지역관광, 농산물 등)들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다.²⁹⁾ 최근에는 쓰고 남은 것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호혜와 나눔의 정신을 기초로 보다 작은 단위·생활세계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결핍을 메우는 일로도 확장되고 있다.³⁰⁾

26) 김형균, 부상하는 공유경제, 시정소프트 활용방안, BDI 정책포커스(198), 부산발전연구원, 2013.4., 4면.

27) 김형균·오재환,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전략으로서의 공유경제 적용방안,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2013., 35면.

28) 고윤승,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6호, 2014. 12., 93면.

29) 고윤승,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6호, 2014. 12., 93면.

30) 주광진, 도시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공유플랫폼 사례, 국토, 국토연구원 2015.3., 84면.

제 4 절 우리나라에서의 공유경제

‘와이어드’의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은 세계 경제가 변화하면서 ‘제3의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³¹⁾ 이러한 제3의 산업혁명을 이끄는 경제모델이 바로 공유경제이며 이를 구현하는 수단이 바로 IT기술임은 앞에서 언급된 바 있다. 한국의 혁신적인 IT 기술은 스마트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 기반 공유경제를 확대해 나가는 잠재적 매개체가 되고 있다. 즉, 공유경제 서비스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강화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³²⁾

이러한 현상은 곧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근래 더욱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셜 벤처들을 육성할 수 있음은 물론,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개인들도 새로운 일자리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³³⁾이하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공유경제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여 보았다.

31)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유경제시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 정책연구 2013., 2면. - “제3의 산업혁명이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를 갖춘 물질이 Web 2.0시대 디지털 재화처럼 대중의 손으로 만들어져 대중사이에 분배되는 물리적 디지털 혁명” (같은글 같은 면)

32) 김기연·김흥규, 협력적 소비,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에 관한 소비자 선호 유형 연구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주관성 연구 (통권 제27호),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3. 12., 24면.

33)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유경제시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 정책연구 2013., 15면.

【국내 주요 공유경제관련 공유플랫폼 현황³⁴⁾】

분 야	회사명	내 용
공간	홈스테이코리아	외국인 방문객 대상 국내 홈스테이 연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청년창업에 대해 훈련, 투자, 교육 등 지원
	코자자	한옥, 템플, 일반주택,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 공유
	처치플러스	예배 중심의 교회를 이웃 소통공간으로 공유
	모두의주차장	빈 주차공간 소유자가 운전자에 공유
	한국라보	세계 각국 청소년에 한국가정 소개
	공유독서실	서울 전역 독서실 좌석 공유
	스페이스노아	지식과 사무공간 공유해 커뮤니티 구성에 협조
교통수단	그린카	시간 단위로 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
	위트콤	IT를 통해 무인 자전거 공유 실천
물품	헬로마켓	개인 간 직거래를 도와주는 모바일 중고장터
	공쓰재프로젝트	공연 후 남은 무대소품 재활용 및 물물교환
	자락당	공동체 안에서 물건을 공유하는 문화의 장
	우리올림	쓰지 않는 악기를 빌려주거나 빌림
	폴업	작아져 못 입는 아이 옷을 이웃과 공유

34) 주광진, 도시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공유플랫폼 사례, 국토, 국토연구원 2015.3., 85면.

제 4 절 우리나라에서의 공유경제

분 야	회사명	내 용
	열린옷장	청년구직자에게 면접 정장 대여
	빌리지	개인 간 중고물품을 모바일 인터넷으로 거래
	타임티켓	공연 당일티켓 할인
	도시광부	무료로 공유돼 함께 입는 공유패션
정보 및 서비스	플레이플래닛	현지 일반인 여행가이드를 중개
	위시켓	앱 개발, 웹디자인 등 프로젝트 중개
	쉐어하우스	일상생활의 다양한 지식을 공유
	일상예술창작센터	작가들의 창작작품을 공유, 거래
	조인어스코리아	지식에 대한 다수 의견을 공유
	온오프믹스	온오프라인 행사 및 이벤트 관리
	소셜통	사회적 경제 소식 및 정보공유
	지엘코리아	글로벌 리더양성 지식공유
	디자인아이피	디자인 및 특허 컨설팅
	레디앤스타트	경영, 영업, IT 등 다분야에서 멘토링 서비스
비앤비히어로	개인 소유의 집부터 한옥마을, 농촌 팜스테이, 남은 공간을 전 세계 여행자들에 제공	

제 3 장 숙박분야 공유경제 현황

제 1 절 공간의 공유

공유경제 대상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공유는 공유경제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국내외적인 플랫폼을 형성-운영되고 있다.

【공간공유 사례35)】

공유자원	공유내용	공유기업	
		국 외	국 내
공간	-빈방, 민박, 기숙사 -사무실 -주차공간	-Airbnb(미국) -betahaus(독일) -Parking Panda(미국)	-코자자, 비앤비 히어로, 돔서핑, 디캠프 -모두의 주차장

이하에서는 이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에어비엔비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상응하는 전개를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에어비앤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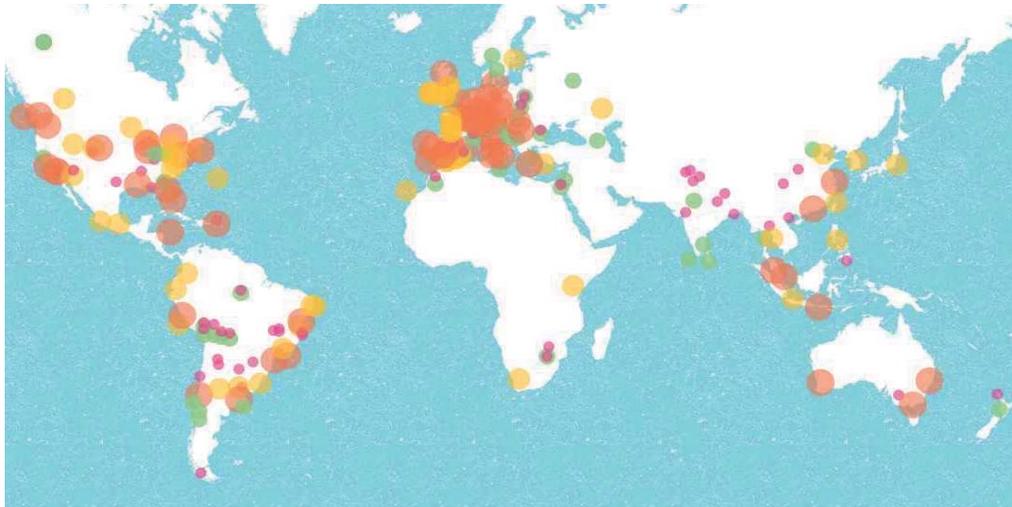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홈스테이, 민박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민박 중개 플랫폼으로, 민박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고, P2P 네트워크와 신기술을 통해 상품 구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⁶⁾

35) 김승길, IT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공유경제(Sharing Economy)’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울산발전연구원, 2015., 44면.

36) 안희자, 에어비앤비(airbnb)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KCTI 가치와 전망 제3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3면.

Airbnb는 2008년 8월에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었으며, 2015년 8월 현재, 전 세계 190개국, 34,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150만개 이상의 객실(방), 1,4000개 이상의 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이용객 수는 4,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는 2013년 1월에 진출하여 한국지사를 설립한 바 있다.³⁷⁾

【에어비앤비 가맹점 분포도(2012년)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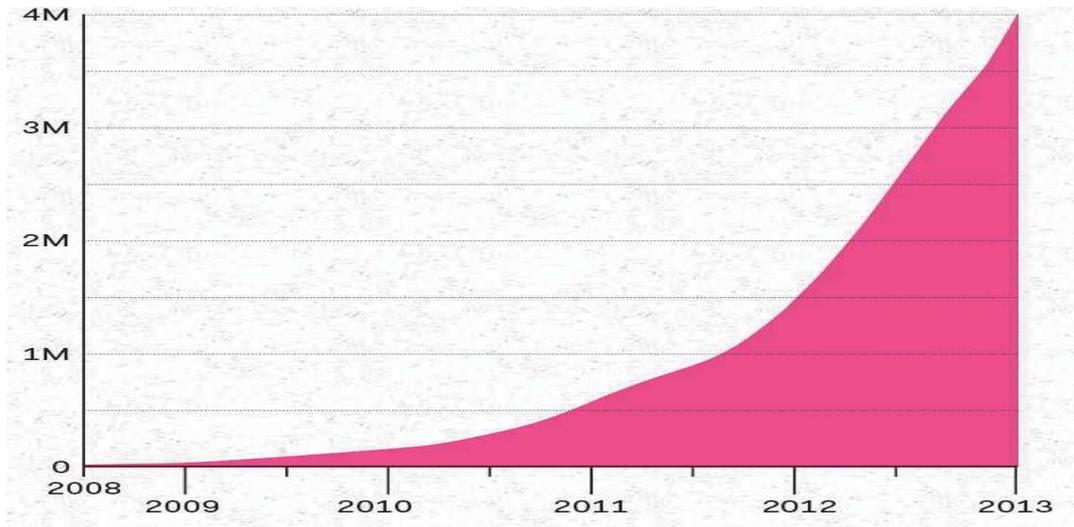


현재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99억 7천 달러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99억 7천 달러의 인터콘티넨탈(Inter Continental Hotel), 95억 5천 달러 수준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하얏트(Hyatt Hotels Corporation)와 동등한 수준이며 223억 6천 달러 수준인 세계 최대 호텔체인 힐튼(Hilton Worldwide)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³⁹⁾

37) 송순영,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소비자정책도향(제64호), 한국소비자원, 2015., 12면.

38) 안희자, 에어비앤비(airbnb)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KCTI 가치와 전망 제3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4면.

39) 차두원,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바라본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R&D InI,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 2014., 33면.

【이용객 수 증가 추이⁴⁰⁾】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적 효과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그 성격의 변화와 운영형태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스키프트(Skift)가 2013~2014년 3회에 걸쳐 18개 도시에서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숙소의 20%인 12만 5천개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실제 숙소를 게시하는 사람들의 80%는 일반인이지만 그 가운데 40%는 여러 개의 집을 사이트에 게시하는 전문 렌탈 업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수익의 대부분은 방보다는 집 전체를 빌려주는 데서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함께 존재하는 아마존(Amazon)과 같이 일반인 호스트와 전문 렌탈업자가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⁴¹⁾ 또한 현재의 공유경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이는 사실상 공유경제라기보다는 임대경

40) 안희자, 에어비앤비(airbnb)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KCTI 가치와 전망 제3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4면.

41) 차두원,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바라본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R&D InI,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 2014., 40면.

제라고 주장되며, 그 이유로서 공유(Sharing)의 전통적 의미는 대가 없는 빌려줌/빌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되어 지고 있다.”⁴²⁾

제 3 절 문제점

1. 국 외

(1) 미 국

미국의 경우 에어비앤비의 불법적인 영업형태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첨예한 대립을 표면화 한 사례는 뉴욕 주의 경우라 할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2014년 한 해 동안 자신들을接客업으로 새 단장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뉴욕의 에릭 슈나이더 법무장관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에 관한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에어비앤비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합법적인 호텔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숙박업체들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결국 법무장관의 요청에 에어비앤비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에 이름을 올린 숙소의 약 72%는 시의 법령에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2014년 10월부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들에 대한 소송절차를 시작하였다.”⁴³⁾

42) 장원재, 공유경제시대의 교통서비스 현황과 전망, 월간교통, 한국교통연구원, 2015., 10면.

43) 박종훈,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 경제 서비스들, 주간기술동향 제 1681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26면~27면.

【미국 내 에어비앤비 관련 논쟁 요약⁴⁴⁾】

	지방정부 (뉴욕주, 샌프란시스코 등)	에어비앤비
기본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시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2/3가 호텔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법은 거주자가 집을 비울 경우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임대 금지 - 뉴욕시 에어비앤비 호스트 중 64%가 아파트 전체를 임대 • 세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스트가 임대수익에 대해 미납세 - 호텔세: 매출액의 14% • 일부 건물주는 에어비앤비 영업을 위해 주택 임대계약 중도 해지 • 에어비앤비 영업으로 인해 주거용 주택 공급 위기 가중 • 에어비앤비는 세금 미납, 안전 시설 미비, 도시계획법 위반 등의 불법 영업 방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소유가 아닌 대여와 차용의 개념으로 보는 공유경제에 입각하여 개인간 주택 임대는 합리적인 모델 •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는 시대 역행. 일부 부작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규제 대상은 아님 • 수익모델 관점에서 기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방식이지만 이러한 모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 저소득층에게는 새로운 수입원
	↓	↓
개선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샌프란시스코: 단기 임대 법제화 검토 - 호스트가 최소 3/4 이상 기간 거주 - 시에 등록 - 14% 호텔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여건의 뉴욕주 임대 게시물 삭제(2014년 4월) • 뉴욕,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지역에서 납세 의사 발표 (2014년 3월) - 지역호텔의 1회성 숙박세율 (11.5%) 수준 (시세금 6%+카운티세금 5.5%) - 구체적 방안은 2014년 6월까지 검토

44) 안희자, 에어비앤비(airbnb)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KCTI 가치와 전망 제3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9면.

(2) 유 럽

1) 독 일

함부르크의 경우, 임시면허 없이도 개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법률(주택법)을 개정하여 에어비앤비를 제도권 안으로의 편입을 추진(2013년 7월 3일)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에어비앤비를 면허 없는 호텔로 간주하면서 법체계 일부를 수정(2013년 6월)하고자 하고 있다.⁴⁵⁾

2) 프 랑스⁴⁶⁾

“파리에서는 2014년 3월 새로운 국가 주택 법안인 ‘Bill Allur’ 법을 통하여 프랑스 어디에서 살건, 지역 시청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 살고 있는 집을 4달 이상 임대하면 최대 25,000유로의 벌금을 매길 수 있음. 이는 살고 있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지 않은 재산의 단기 임대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음
- 살고 있지 않은 재산의 단기 임대는 대도시에서는 조건 없이 허락되고 있으나, 다른 도시들은 부가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 부가적 요구는 비거주지역의 단기임대를 일시적으로 승인 받거나 또는 비거주 주거지가 게스트 숙박에 전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사용허가를 받는 것임
- 세입자는 집 주인의 승인을 구한 후 단기임대를 할 수 있음”

등이다.

45) 안희자, 에어비앤비(airbnb)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KCTI 가치와 전망 제3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8면.

46) 송순영,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소비자정책도향(제64호), 한국소비자원, 2015., 11면.

3) 영 국⁴⁷⁾

“영국의 경우 ‘The Greater London Powers Act’를 재검토하여 2015년 3월, 런던뿐만 아니라 UK의 나머지 도시에서도 지방정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주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주택은 1년에 90일까지 공유할 수 있다.”

2. 국 내

국내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총괄적으로 표현한다면,

“에어비앤비 비판론자들은 에어비앤비가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워 세금 탈루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 개인 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지만 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도 없다. 일종의 ‘숙박노점상’인 셈이다. 하지만 마치 노점상처럼 운영되는 에어비앤비 개실은 위생·안전검사 등도 받지 않는 관리의 ‘사각지대’다. --- 에어비앤비는 집이 손상될 경우 최대 12억 원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여행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책은 없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는 ‘자체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라’는 공지만 띄워놓은 상태다.”⁴⁸⁾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7) 송순영,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소비자정책도향(제64호), 한국소비자원, 2015., 12면.

48) 김환표, 브라이언 체스키:“호텔만 아니면 어디든 머물 수 있다”, 인물과 사상, 인물과 사상사., 2015.8., 92~93면.

아울러 SiteJaber에 제기된 Airbnb에 대한 소비자 평점은 2015년 5월 31일 현재, 5점 만점에 2.0점으로 나타나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제기된 불만 종류별로는 예약, 결제, 취소, 환불 등의 거래문제가 가장 많아 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⁹⁾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평가 및 상담사례는 곧 통신민박소개업에 대한 법제도적 틀 안에 있어, 소비자로서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관심과 법제도적 대응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Airbnb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⁵⁰⁾】

번호	내 용	문제유형
1	예약 및 결제를 했다가 날짜가 잘못 입력된 것을 알고 동일 날짜에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irbnb 에 수수료 6만 2천원을 물음(예약금액 4박 64만원 의 6~12% 수수료)	취소 및 환불
2	4박 52만 5천원(4박 41만원 +수수료 10만원 + 청소 요금 4만원 - 쿠폰할인 2만5천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보증금 41만원 포함해서 95만원이 결제. 2주가 되어도 환불안됨. 나중에 에어비앤비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증금은 없고 원래 숙박비가 그 가격이라며 확인해 보라고 해서 숙박사이트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 가격임. 원래 결제했을 땐 분명히 보증금 포함 그 가격이었던 바 정말 억울함	사기성 결제

49) 송순영, 공유경제 서비스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8, 한국소비자원 2015., 101면.

50) 송순영, 공유경제 서비스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8, 한국소비자원 2015., 103면.

번호	내 용	문제유형
3	Mia라는 호스트의 빌라를 예약하였으나, 그곳엔 또한 사람이 숙박을 하고, 우리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다른 썬 곳으로 안내됨. 나중에 알고 보 니 Mia는 중간 에이전시이고, 우리는 계획적으로 이중계약이 된 것임. 즉 사기를 당한 것임에도 불 구하고 Airbnb는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음	사기성 계약에 의한 환불
4	Airbnb 숙박 후 집 주인이 와서 아무 이상이 없음을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집 대문에 미세한 긁힘이 있다며 60만원을 지불하라는 메일이 옴. 원래 이는 신용카드 보증금으로 오픈 된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가 회사카드여서 폐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결제를 해 달라는 이 메일이 오고 있음	시설파괴 책임

제 4 장 외국인관광 숙박업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제 1 절 법제개선방향

현행 우리나라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통신민박소개업’의 경우 비록 그 국내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제반적 문제점(관리-감독, 조세 등)에 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는 하나, 법제적 관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외국에 본사(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현행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상의 규제체계내로의 포섭을 위한 별개의 규정 설정 등에 대한 입법화가 곤란하다는 법리적 한계를 가진다. 즉 해외 사업자 등의 법적 행위에 대한 국가 간 상호 협약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일면 국가의 법규제적 행위는 국제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다분히 상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법적 관련 규정에 있어서도 ‘Airbnb’와 같은 단순 숙박중개서비스에 대하여서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진입규제적 규정(신고 등)을 두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사 국내 유사 업종에 대한 경우에 반하여 비단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권리-의무 주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집(빈방)공유 관련 법·제도 검토⁵¹⁾】

구 분	현행 기준	특 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 관광객을 한정하여 숙식 등을 제공	-내국인 관광객에게 빈방 공유 불가

51) 송순영,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소비자정책도향(제64호), 한국소비자원, 2015., 7면~8면.

구 분	현행 기준	특 징
<관광진흥법>	-주민이 거주하고 세대원이 외국어서비스 가능 -도시지역의 연면적 230m ² 미만의 단독주택 등	-공여자 거주 조건으로 빈집 공유 불가 -외국어 서비스 불가 시 공유 불가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한옥의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 설을 갖추어 관광객 유치	-내국인 관광객에게 빈방 공유 가능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	-주민이 거주하고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단독주택과 다가구 등	-내국인 관광객에게 빈방 공유 가능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제반 상황에 근거, 이와 같은 숙박 중개서비스 시스템(플랫폼)에 등재하는 우리나라 외국인관광숙박업자 등에 대한 법제적 정비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최근 외국인 대상 관광숙박업종에 있어 문제시되고 있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중심으로 법제적 규정의 주요내용과 이의 집행에서 발생하는 제도운영 간 비정합성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설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규제밀도에 관한 고려이다. 특히 통신티민박소개업과 같은 공유경제 관련 사업의 경우 그 대표적 특성은 ICT기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며, 기존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⁵²⁾ 아울러

52) 김태오, ICT Based Innovation and Existing Regulation: focused on the Taxi-like Uber Service in Light of Jurisprudence,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 2015. 5., 109면.-

“규제는 다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피규제자에게 규제는 부담이지만, 그 규제로부터 직접 보호되거나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자에게는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규제의 속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ICT 혁신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면제, 그리고 규제철폐 주장은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ICT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또한, ICT 혁신이 기존 규제에서 본래 규율하고자 하는 바를 회피하기 위한 면죄부나 그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선행 장에서 언급된 소비자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관점을 아울러 언급하고자 한다. 이때 언급된 주요 국가 등에서의 전개 경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Airbnb 관련 법을 정비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련법 정비 시 ‘활용되지 않는 유희 자원을 타인과 공유하여 불필요한 소비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공유경제의 정신을 중시하여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⁵³⁾

제 2 절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법제현황과 문제점

1. 현행 법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규제 체계

(1) 관광진흥법령상 주요규정

1)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⁵⁴⁾〉

제 3 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53) 송순영,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소비자정책도향(제64호), 한국소비자원, 2015., 13면.

5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undefined>, 2015년 8월 3일 최종확인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55〉

제 2 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undefined>,
2015년 8월 3일 최종확인

- 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바.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사.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 1)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 1) 일반관광유람선업 :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2) 크루즈업 :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삭제 <2014.7.16.>

4. 국제회의업의 종류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

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업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관광케도업 : 「케도운송법」에 따른 케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정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6 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법적 지위

현행법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이라고 함)은 법률상 업종은 아니며(법률상으로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임) 대통령령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고 있는 업종중 하나라 할 것이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은 관광사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7종으로 대분류하고 있을 뿐이고 법 제3조제2항에서 이들 7종을 대통령령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관광편의시설업을 다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의 11개 업종으로 세분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사업의 대분류를 신설하지 않는 한 도시민박업을 법률상 업종으로 격상시킬 수 없다고 보이나, 도시민박업은 뒤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그 개념표지나 특징으로 보아 대분류의 일종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3) 관광편의시설업의 개념표지 및 특징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은 도시민박업이 속한 관광편의시설업을 전체 7종의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것으로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관광진흥법」은 6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업태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면 향후에도 어떤 것이든 관광편의 시설업에 포섭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체계상으로는 도시민박업 외에도 법률상 규정된 6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의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여 이를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4) 도시민박업의 개념표지 및 특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가목은 도시민박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 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⁵⁶⁾이나

56)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i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⁵⁷⁾, 연립주택⁵⁸⁾ 또는 다세대주택⁵⁹⁾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이 영업주체인 경우에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하는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⁶⁰⁾

이러한 개념표지를 토대로 도시민박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민박업은,

- i) 위에서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주택이어야 하고,
- ii) 외국인 관광객(일정한 요건 하에 마을기업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예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 iii)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 iv)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주택이 아니거나,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대상이 아니거나.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거나,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면 어느 경우에도 도시민박업에 포섭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57)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58)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59)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60) 이상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1%B4%EC%B6%95%EB%B2%95#J6072498>, 2015년 8월 3일 최종확인

(5) 도시민박업에 대한 현행법령상의 입지규제

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이므로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규제가 1차적으로 적용된다. 즉

- 법 제6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⁶¹⁾을 받아야 하며,
-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 법 제10에 따른 관광표지 부착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도시민박업은 법 제6조에 근거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 i) 건물의 연면적이 230m² 미만이어야 하고,
- ii)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 iii)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행정제재에 대한 입법 불비

본 연구의 주요대상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법령상 지위 및 구분체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이처럼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상 ‘관광편의 시설업’군에 속하고 있는 여타의 업종과 달리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내지 영위하고 있는 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적 규정이 불비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61) ‘지정’제도는 인허가 관련 규제 중 가장 가벼운 규제의 일종임

즉 현 관광편의 시설업에 속하고 있는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 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식품위생 법령),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광케도업(케도운송법) 등은 각각의 관련 개별 법률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현행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및 제 37조(과징금부과)와 같은 행정 제재적 규정범위에서 이탈하여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불비는 경우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서 해당업자의 측면에서는 업의 영위에 있어 방만한 운영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동 관광편의 시설업 군에 속한 여타 사업자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설 이용자 측면에 있어 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처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는 행정- 국민 간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시급한 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고려되어 지는 것이다.

제 3 절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이와는 달리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대상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관련 규정과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 즉 통신망을 통한 관련 소개 플랫폼상 허위 숙박시설 기재, 목적을 달리하여 건축된 시설물을 이용한 위법한 영업행위, 유사업종에 있어서의 과도한 입지규제적 요건에 따른 사업자 불편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는 그 해소방안의 모색에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성격을 가진다 하겠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현행 관광진흥법 상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 시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그 해소를 위한 입법 경제적 관점 하에서의 법률 자체의 개정보다는 하위법령의 개정을 주안점으로 하여 제언하여 본다.

1.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한 법령상 구분체계 재구성

(1)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이용시설업종으로의 전환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에 대한 행정체제 마련 및 기존 용도가 다른 기타 건축물 등의 위법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숙박업 영위에 대한 해소로서의 국가차원의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입법 형식적으로는 입법 경제적 부담 및 해당 사안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법률상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의 정비로 이를 해소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구분체계 재구성 시 주요고려사항

현행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2항에서 “---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광숙박업에 대한 세부 분류는 주관부처의 정책적 견해에 따라 이를 세분화내지 그 분류체계를 달리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때 현행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서는, 이를 전문휴양법,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등)에서 규정되던 개정대상을 관광객이용시설업종의 하나로 이동하여도 종래 규정상 구분목적 등에 비추어 문제시 될 소지는 없는지, 또한 현행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에서와 같이 구분체계를 달리할 경우, 법리상 기존 제도에 비하여 보다 규제강화적인 등록제도로의 변환에 대한 관계인의 법감정(수긍성)에 대하여서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의 포섭에 따라 연동하여 고려하여 진 행정 제재적 측면에 있어 동법 제35조(등록취소)와 제37조(과징금의 부과)의 관계에 따라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항 상 별표 3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함께 그 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대학 인근 하숙 및 원룸 영업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로의 전환 가능성

(1) 연면적 상향 조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가능 여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⁶²⁾ 별표 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서는 도시민박업 지정기준의 하나로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나머지 지정기준을 유지하되 연면적 규제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민박업은 대통령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카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하숙이나 원룸은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의 연면적 기준을 개정하여 상향조정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따라서 하숙이나 원룸 영업을 도시민박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면적의 최고한도를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함께, 도시민박업의 정의 내지는 개념표지를 체계적인 문제가 없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 카목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도시민박업의 연면적 최고한도와 정의 내지 개념표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도시민

6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 uery=%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undefined>,
2015년 8월 3일 최종확인

박업 제도가 관광진흥법령에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도입된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기존의 하숙이나 원룸의 업태가 도시민박업이라는 용어와 도시민박업의 속성에 부합하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도시민박업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창안하고 그 대체 용어에 하숙이나 원룸 영업이 포섭되도록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이라는 한계를 내포한 상태에서 현행 관광숙박업과 어떻게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게 구별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소위 ‘게스트하우스업’ 제도 도입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여부

최근에는 호스텔과 유사한 숙박시설인 소위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바, 게스트하우스는 저렴한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이를 법제화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용어를 그대로 법령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새로운 용어를 창안할 필요가 있다고 고려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일종으로 호스텔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소위 게스트하우스업이 현행법령상 호스텔업과 유사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하숙이나 원룸 영업이 게스트하우스업에 포섭되도록 호스텔업을 그 명칭과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바목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소형호텔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스텔업을 게스트하우스업으로 재편하는 경우에는 소형호텔업 및 관광편의시설업과의 명확한 구분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게스트하우스업을 법제화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의 관계에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에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만일 관광편의시설업에 준치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반드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도시민박업을 포함한 원룸 영업 등을 소위 게스트하우스업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규제의 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바,

- 첫째, 현행법상 관광숙박업은 등록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정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바뀌는 데 따른 강화된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등록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법으로 규제의 강도를 줄이는 것도 가능할 것임),
- 둘째, 도시민박업을 포함한 원룸 영업 등을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게스트하우스업으로 재편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규제 완화 차원에서 게스트하우스업을 관광숙박업이 아닌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호스텔업까지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제3의 새로운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위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대학 인근 하숙이나 원룸 영업의 도시민박업 예로의 흡수 및 게스트하우스업 으로의 편입이 어려운 경우 제3의 새로운 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광편의시설업에 도시민박업 및 관광숙박업과 구분되는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면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고, 이 새로운 업종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이 포섭되도록 함으로써 지정제도 등 관련 규제의 강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하숙이나 원룸 영업에 부합되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사후에 달리 사용하게 되는 데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는 방안(가령, 하나의 건축물을 그 층별로 용도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연면적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관광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에어비앤비의 불만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정보공개, 소비자피해 보상 등에 대한 권고적 조항의 강화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한 분석에 따른 우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⁶³⁾

【공유서비스에 있어 소비자 보호관련 법률 주요내용】

법규범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⁶⁴⁾	<p>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63) 공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적 방안에 관하여 상세히는, 송순영, 공유경제 서비스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8, 한국소비자원 2015., 123면 이하.

6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

법규범	주요내용
	<p>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p> <p>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② 생략</p> <p>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p> <p>④ 생략</p> <p>시행령 제25조(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제공)</p> <p>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시행령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p>

법규범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는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p>약관규제에 관한 법률⁶⁵⁾</p>	<p>제 3 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 7 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6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

법규범	주요내용
	<p>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상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p>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 ⑨ 생략</p>

참고 문헌

- 곽노완, ‘공유도시 서울’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3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8.
- 고윤승, ICT 발달에 따른 공유경제에 대한 소고, e-비즈니스연구, 제15권 제6호, 2014. 12.
- 김기연 · 김홍규, 협력적 소비,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에 관한 소비자 선호 유형 연구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주관성 연구 (통권 제27호),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3. 12.
- 김승길, IT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울산발전연구원, 2015.
- 김점산 · 지우석 · 강상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미래와 성공조건,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2014. 2.
- 김태오, ICT Based Innovation and Existing Regulation: focused on the Taxi-like Uber Service in Light of Jurisprudence, 경제규제와 법 제 8권 제1호, 2015. 5.
- 김환표, 브라이언 체스키 : “호텔만 아니면 어디든 머물 수 있다”, 인물과 사상, 인물과 사상사., 2015. 8.
- 김형균, 부상하는 공유경제, 시정소프트 활용방안, BDI 정책포커스(198), 부산발전연구원, 2013. 4.
- 김형균 · 오재환,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의 공유경제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2013.
- 박종훈,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 경제 서비스들, 주간기술 동향 제1681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참 고 문 헌

송순영, 공유경제 서비스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8, 한국소비자원 2015.

송순영,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소비자정책도향(제64호), 한국소비자원, 2015.

안희자, 에어비앤비(airbnb)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KCTI 가치와 전망 제3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장원재, 공유경제시대의 교통서비스 현황과 전망, 월간교통, 한국교통연구원, 2015.

주광진, 도시혁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공유플랫폼 사례, 국토, 국토연구원 2015. 3.

차두원,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바라본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R&D InI,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유경제시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모델, 정책연구 2013.

황기연·전효정, 교통부문에서 공유경제의 실험 - 카셰어링을 중심으로-, 교통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교통연구원, 2014.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